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 심사 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와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2항)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나.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일반수신자가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다.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 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타 법률의 적용 배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라. 전송 방법·절차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7)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7)

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8~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8)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중요사항 변경, 예비지정,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9)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바.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2)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 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3)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제20조 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4항·제5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비용, 운영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기존 업무위탁 규정에 추가

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정비(영 제29조의2제1항·제4항)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타.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 명확화(영 제29조의4제2항)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5.1. ~ 2024.6.10.) 진행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통지

제29조의2제1항제4호 중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을 “따라 공표되거나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근 1년 이내에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제29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결합·반출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지정 이후 결합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전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일 것

2.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4. 그 밖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
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
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개인정보를 전

송받아 확인하는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로서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② 일반수신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법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4(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서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전송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보의 전송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3. 전송시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응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

4.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시스템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개인 정보 등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전송받는 자에 따라 전송받을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가. 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체·영상·병리검사결과 등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환자진료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처방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조제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통해 생성·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과 유사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분야 기관·단체가 보유한 정보

2. 제42조의2제2항제2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기간통신

서비스 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청구정보, 납부정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주문정보, 구매정보, 이용정보, 지불정보 등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그 밖에 제42조의2제2항제4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에 한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본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8. 그 밖에 전송 요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정보주체는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게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미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4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3.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4. 「약사법」 제30조제3항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
 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 방법 등) ①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

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대한 전송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 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를 대신하여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는 [별표 1의2]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접근수단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3.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4. 그 밖에 사용·보관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접근수단으로써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⑩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의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전송 요구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 내역 관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1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법 제20조의2 및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 및 전송 내역 보관, 통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7(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 의심될만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7. 정보주체 본인,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8.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9. 법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10.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정보전송자는 법 제35조의2제6항 및 제42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방법과 절차를 전송 요구할 당시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8(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로 분류된다.

1. 중계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일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의 업무로서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 전문기관: 제1항의 업무로서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중계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 업무

를 함께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계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42조의4제2항제1호의 정보를 전송 요구하는 경우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해당 정보를 특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하여야 한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수준 및 전문성:

가.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성있는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제42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2.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능력(다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1) 중계 전문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 원 이상)

2)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 자본금 1억 원 이상(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억 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정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
항의 지정요건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제42조의4제2항제1호의 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단, 제2호의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지정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지정의 신청 및 심사 절차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지정’으로 한다.
-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시 조건을 붙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 제3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제2항에 따라 지정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사받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사업계획서의 변경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이 제8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려는 중요사항이 제42조의4 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예비지정, 재지정, 심사, 변경 승인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42조의9제6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6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제42조의11에 규정된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 전문기관은 전송 관련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용기관 통지 등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예비지정, 중요사항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재지정,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호위원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 예비지정, 중요사항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사실을 통지받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개인정보의 파기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행위규칙)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의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2(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보전송자:

가. 법 제35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에 관

한 사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반수신자:

가.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한 기능 적합성 및 보안 취약점 조치 여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가. 제42조의6제12항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가. 제42조의6제12항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

나.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일반수신자에 한한다)

다.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한다)

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서류

마. 전송 요구 방법(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 한한다)

바. 기능 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 내역(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한다)

사.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계 전문기관에 대한 처리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2조의13(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법 제35조의4제2항의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일반수신자에게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은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법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6제12항에 따른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일반수신자 및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과 중계 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 구축·운영 비용 등 정보전송자의 전송요구권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의 구축비용, 운영 비용 및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2조제3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2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업무 지원
11. 제42조의12에 따른 관리·감독 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기능 적
합성 검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12. 제42조의13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기술 업무 지원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42조의8부터 제42조의13, 제62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사업자는 제42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대한 적용례) 영 제2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지정 신청을 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일반수신자 금지행위(제42조의6제7항 관련)

1.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 연구·교육, 유통·판매 등 처리하는 행위
2.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6.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8.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 철회하지 않는 행위
9.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10.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11.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12.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1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금지행위(제42조의11 관련)

1. 중계 전문기관 금지행위

- 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 나.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다. 중계 전문기관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 이전, 파기하지 않는 행위
- 라. 중계시스템 장애, 오류 등 발생 시 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용기관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마. 중계수수료를 과도하게 측정하거나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바. 중계 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 사. 중계 업무 종료 후 정당한 사유(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등)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 아. 중계기관의 지위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중계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 자. 중계업무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차.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 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 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일반 전문기관 및 특수 전문기관 금지행위

- 가.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나.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구한 전송 요구 대상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 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사.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자.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 철회하지 않는 행위
- 차.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카.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 파.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 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거.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 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 너.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특수 전문기관 기타 금지행위

- 가.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
- 라.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 ①·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3항에 따른 개 인정보 전송 내역 통지
④ (생략)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 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 이 없을 것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따라 공표되거나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 ----- 5. 최근 1년 이내에 제29조의2
<신설>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
· 감독 등) ① (생략)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
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
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 .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결합·반출 실
적이 없거나 현저히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지정
이후 결합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사업수행 의지 등을 검토
하여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
·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

1. ~ 3. (생략)

③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전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일 것

2.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4. 그 밖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신 설>

<신 설>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
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
상일 것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
로서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
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② 일반수신자는 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법 제
3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4(전송 요구 정보의 범

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

2제1항에 따라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서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전송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보의 전송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3. 전송시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응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

4.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시스템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전송받는 자에 따라 전송받을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가. 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체

· 영상· 병리검사결과 등

「의료법」 제22조 및 제2

3조에 따라 환자진료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처방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조제 등과 관련하여 생성

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

기 지원법」에 따른 혁신

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통해 생성·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과

유사한 정보로서 보건복지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보건의료 분야 기

관·단체가 보유한 정보

2. 제42조의2제2항제2호의 제3

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기간통신서비스 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청구정보, 납부정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업무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주문정보, 구매정보, 이용정보, 지불정보 등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그 밖에 제42조의2제2항제4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부가통신업무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신 설>

하는 정보에 한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본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에 한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8. 그 밖에 전송 요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주체는 일반수신자, 개
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게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
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은 미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
확하게 인지하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
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
기적으로 제4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3.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4. 「약사법」 제30조제3항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

8.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 방법

<신 설>

등) ①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대한 전송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 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를 대신하여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

자는 [별표 1의2]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접근수단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3.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4. 그 밖에 사용·보관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접근수단으로써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⑩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의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전송 요구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
유(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 내역
관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
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12항에 따
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법 제
20조의2 및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
다.

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송받
은 정보의 분리 보관 및 전송
내역 보관, 통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전송 방법 등과

<신 설>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7(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7. 정보주체 본인,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8.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9. 법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10.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설>

② 정보전송자는 법 제35조의2 제6항 및 제42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방법과 절차를 전송 요구할 당시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8(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35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말한

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로 분류된다.

1. 중계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일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3호의 업무로서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 전문기관: 제1항의 업무로서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중계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

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계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42조의4제2항제1호의 정보를 전송 요구하는 경우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해당 정보를 특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하여야 한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

<신 설>

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의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별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수준 및 전문성:

가.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성있는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제42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2.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능력(다만, 법 제2조제6
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은 제외한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
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1) 중계 전문기관: 자본금 1
0억 원 이상(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 원
이상)

2)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
문기관: 자본금 1억 원 이
상(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
총계 1억 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
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

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제1항의 지정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지정요건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제42조의4제2항제1호
의 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단, 제2호의 자는 제외한
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

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
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⑤ 지정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보호위원
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지정의 신청 및 심사
절차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지정’으로 한다.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시 조건을 붙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 제3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제2항에 따라 지정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사받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사업계획서의 변경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이 제8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려는 중요사항이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있는 경우 사전에 보

<신 설>

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세 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예비지정, 재지정, 심사, 변경 승인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스스

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
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42조의9제6항의 조건을 위
반한 경우

4.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63조에 따른 관계 공무
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제42조의11에 규정
된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 전문기관은 전송 관련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
월 전까지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용기관 통지 등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예비지정, 중요사항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재지정,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호위원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 예비지정, 중요사항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 설>

<신 설>

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사실을 통지받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개
인정보의 파기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행위규칙) 법 제35조의3제
3항제2호의 “개인정보를 침해
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의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2(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제3자 대상 정보 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보전송자:

가. 법 제35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반수신자:

가.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

른 지정요건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한 기능 적합
성 및 보안 취약점 조치 여
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
에 관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
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
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가. 제42조의6제12항의 개인
정보 전송 내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

가. 제42조의6제12항의 개인

정보 전송 내역

나.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일
반수신자에 한한다)

다.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

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
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
한다)

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에 관한 서류

마. 전송 요구 방법(일반수신

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 한한다)

바. 기능 적합성 및 취약점 점

검 내역(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에 한한다)

사.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

고 중계 전문기관에 대한 처리

<신 설>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2조의13(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법 제35조의4제2항의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일반수신자에게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은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법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6제12항에 따른 전
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제3자 대상 정보전
송자는 제외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에게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
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
라야 한다.

⑤ 일반수신자 및 일반 전문기
관, 특수 전문기관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적으로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개인정
보 전송 지원 플랫폼과 중계 전
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
한 시설 및 기술 구축·운영 비
용 등 정보전송자의 전송요구권

	<u>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법 제35조의 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u> <u>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의 구축비용, 운영비용 및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u>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제62조(업무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④·⑤ (생략)	③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2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업무 지원 11. 제42조의12에 따른 관리·감독 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기능 적합성 검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12. 제42조의13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기술 업무 지원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연 락 처	(02) 2100 - 3172